

「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특화단지 공모」

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‘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’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동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3일

산업통상부장관

1 | 개 요

□ 개 요

- 산업통상부는 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‘법’)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, 제68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해 ‘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’를 지정

□ 추진 근거

- 법 제45조(소재·부품·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), 제47조(특화단지육성시책), 제48조(특화단지의 지원)
- 동법 시행령 제67조~제71조
- 동법 시행규칙 제17조

□ 지원 내용 ※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- 산업기반시설*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(법 제48조)
* 수도시설, 전기시설,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, 하수도·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공동 기술개발사업(법 제24조)
- 수요기업의 실증설비 개방 지원 및 실증설비 확충 지원(법 제30조, 법 제33조)
- 산업계·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한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(법 제40조)
- 특화단지 입주 기업·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, 임대료 감면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(법 제48조)

- 특화단지 입주 기업·연구기관에 대한 국유·공유재산 임대료 감면(법 제48조)
- 환경·노동 관련 규제 신속처리 등 규제특례 지원(법 제64조, 65조, 66조, 67조)
- 그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2 신청 요건

□ 신청 주체

-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‘시·도지사’)

□ 신청 대상

- 앵커기업*을 포함하고, 협력사, 연구소,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

* 소부장 특화단지에 소재하거나 소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부장 관련 기업(수요기업 포함) 중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
↳ △기술 리더십(R&D, 평가, 양산 등) 발휘, △투자 유치 구심점 등

□ 지정 요건

- 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

*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검토·평가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

【 신청 요건 관련 법령 】

□ 법 제45조(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)

1.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
2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

□ 시행령 제67조(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)

1.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
2.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
3.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
4.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
5. 관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'시·도')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

3

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

□ 신청 기간

○ '26. 3. 23 (월) ~ '26. 4. 22(수)

* 부득이 온라인 접수 불가 시 4.22(수) 신청기간 내 담당자 협의 필요

□ 신청 방법

○ (온라인 접수) www.k-pass.kr 내 '과제신청'을 통해 온라인 신청 (접수번호 확인)

*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사업관리시스템 (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사전 회원가입 필요)

□ 제출 서류

○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(「서식 19호」, 시행규칙 제17조)

○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(시행령 제68조 제2항 근거)

○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

4

향후 일정

○ (검토·평가)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, 평가 등을 진행 (필요시 현장실사, 발표평가 등 실시)

○ (심의·지정)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

< 추진일정(안) >

지정 신청 접수	검토·평가	심의·결정	지정 통보
26.3.23 ~ '26.4.22	'26. 4~6월	'26.6~7월	'26.7월
시·도지사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	①사전검토위원회 ②현장조사(필요시) ③선정위원회	①관계부처 협의 ②경쟁력위원회 심의	산업통상부

* 상기 일정은 단계별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결과·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최종 선정

5

검토 기준

검토항목	검토기준
▶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목표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· 소부장 집적도 · 앵커기업 역할 · 핵심기술에 대한 자립 및 생산기반 마련 계획 · 수요-공급기업, 지원기관 간 협력생태계 구성계획
▶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토지, 용수, 전력 확보계획의 타당성, 부지개발 여건 · 근로자 정주 환경 및 배후도시 조성 여부·개선 등 · 산업입지 측면에서 해당 입지의 적합성
▶ 지역 주요산업과 소부장 산업간 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성 · 앵커·협력기업의 연차별 투자·고용 계획 · 특화단지 내·외 기업간 상생협력 계획 · 다른 단지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동일·유사 업종 특화단지 既 존재 시
▶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 및 협력기업 등의 기술 인력 현황 ·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·육성 방안 · 관할 시도 내 △혁신기관(대학, 연구소, 공공기관)-△수요기업-△해외기업 간 연계방안
▶ 지자체 도시·산업 계획과 연관성, 지속발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자체의 육성 의지 · 지자체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타 국비사업과 연계계획 ·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계획 ·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효과

* 상기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6

기타 안내 사항

- (설명회)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개시 후, 특화단지 지정 요건, 분야, 절차 및 육성 계획서 작성 방법, 예비검토회의 결과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예정

※ 일시: 2026년 4월 1일 (수), 14:00 청주 오스코

- 사전질의서 : 육성계획서의 작성, 신청 방법 등에 관해 3월 27일 (금)까지 문의 처리 제출(eMail)

- (신청서류 보완 요청) 제출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,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-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(☎ 044-203-4927, ahnhoyun@korea.kr)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(☎ 02-6009-3906, xyz@kiat.or.kr)